

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(아빠도 가능)

● 사업목적

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·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

● 사업내용

구분	대상	내용	지원요건 등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	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	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(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(단축 후 근로시간 : 주당 15~35시간) 을 허용해야 함 *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,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
육아 휴직 급여	상동	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-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원, 하한 50만원) ×(5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, -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50만원)×(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-단축 후 소정근로시간-5)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● 사업추진체계(지원절차)

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
- 부산고용복지+센터 : 051-860-1914
051-860-2903
051-860-1910
051-860-2063
-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: 051-760-7241~2
-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: 051-330-9943~4
051-330-9956